

보도 일시	2023. 1. 5.(목) 12:00	배포 일시	2023. 1. 5.(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총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3201)
		담당자	서기관 박형민 (044-204-3212)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1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7. 1. ~ '22. 12. 31.
	간이과세자	'22. 1. 1. ~ '22.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7. 1. ~ '22.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2. 10. 1. ~ '22.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참고 3】**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화) ~ 1.26.(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2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 (기존 14종)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 (개선 16종) 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매출항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매입항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전자세금계산서	0	0	0		전자세금계산서	0	0	0
전자계산서	0				전자계산서	0			
신용카드 (부가세포함)	0				사업용신용카드	0			
현금영수증	13,650,010,63		1,364,999,562		현금영수증	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0			

※ 신용카드 매출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항목	금액(원)		구분	제출대상 여부	세액(원)
	예정고지세액 (일반)	52,690,000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일반)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	N	
예정부과세액 (간이)	0		신용카드매출선표등 발행세액 공제 (연간 천만원 한도)		30,000
예정신고세액 (간이)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연간 백만원 한도)		10,000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 (미리채움 추가)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4】**

월별	세액공제 대상 발급건수	발급공제세액
2022/07	15	3,000
합계	15	3,000

-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 간이과세자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단위:원) 작성하기

매출내역이 있으면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사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업	(5)	40,000,000	15/100	10/100	600,00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0	20/100	10/100	0
	숙박업	(7)	0	25/100	10/100	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0	30/100	10/100	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0	40/100	10/100	0

- (세금비서 서비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 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버튼 클릭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5】**
 - * ('21년 2기 확정) 98종, 100만 명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5%↑)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5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¹⁾**, **모바일 손택스²⁾**,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정 사례 【참고 6】 |

- ①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②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③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④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총괄>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3201)
		담당자	서기관	박형민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담당자	사무관	박현주 (044-204-2502)
			주무관	지승환 (044-204-2512)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0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1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13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4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5
6.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21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6.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및 1.27.(신고마감일) 06:00~2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일반과세자 및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3. 1. 27.(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연장기간 : 2일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참고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0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 1.12.
2		신용카드 매출	23. 1.12.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 1.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 1. 1.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 1.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 1.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 1.12.
8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 1.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 1.12.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 1. 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 1. 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 1.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 1. 1.
14		재고납부세액	23. 1. 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 1. 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3. 1. 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3. 1. 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3. 1. 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3. 1. 1.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1.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 1.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 1.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 1. 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3. 1.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1.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1.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 1.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 1.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3. 1. 1.

참고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세금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7:00 ~ 23:30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 원천세
- 양도소득세
- 인지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 02 세금신고 진행
-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삭제내역 조회

신고서 작성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예정고지세액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대리납부 >
- 카드사 대리납부 >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폐업확정)	월별 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영세율)	월별 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 작성 |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예정고지세액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 대리납부 >
- 카드사 대리납부 >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정기신고 (대화형 방식)	정기신고 (폐업확정)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납세관리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장대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경정
조회

-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 고지내역 조회 >
- 체납내역 조회 >
- 환급금 조회 >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
-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 >

세무대리인 공통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경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등록
해지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
- 현금영수증 매입총액 조회 >
- 사업용신용카드누계조회 >

신고대리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
해지
조회

- 증여세결정내역 >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

납세관리

납세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관리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임사업자 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수임 사업자를 선택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과세기간(년/기) 년 기 ▼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수임사업자 조회

기본사항

신고연내 자료에 대한 문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1. 개별분석 자료

● 신고 도움 자료

안내사항	안내내용
------	------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납세자등록상황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개별분석자료 제공
 수임사업자 전체
조회하기

※ 개별분석자료 제공 : 수임 동의된 납세자중 개별안내자료가 등록된 납세자목록 조회

· 납세자 등록상황

사업자등록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수임일자	동의일자

- 16 -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년 예정 확정

안내사항	안내내용	
그 밖의 공제해입금액	그 밖의 공제해입금액(①)	그 밖의 공제해입금액/해입금액(①+②)
그 밖의 공제해입금액	13,940	47,205
경도		29%

○ 사업과 관계없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서 명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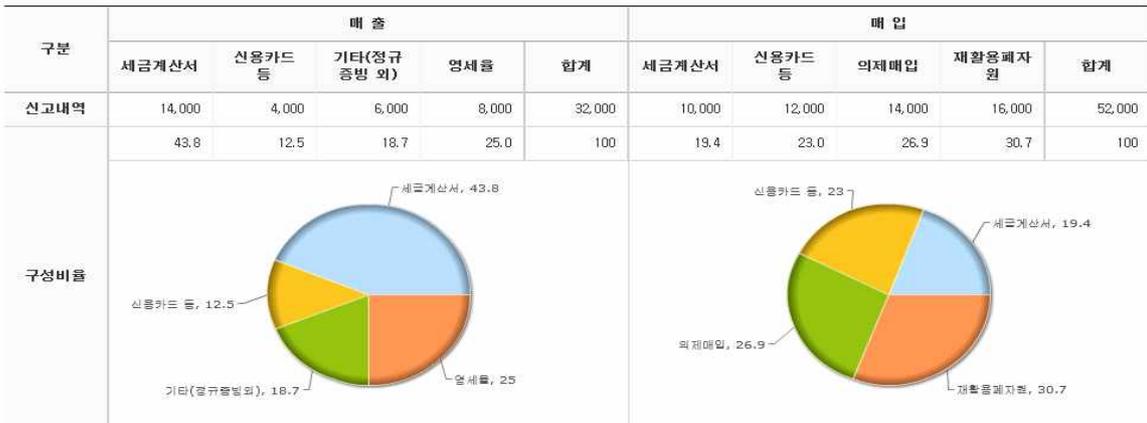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신고 누락 예) 소송 불복 성공보수, 신고대행 수수료, 검인비 등 소액 수수료, 설계 디자인 보수 ○ 실제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고 누락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후 신고 누락 ○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가사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 직전기 개인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

(단위: 천원, %)



● 직전기 업종평균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주업종기준)

(단위: %)



* 상기 매출 및 매입 구성비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본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년 기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 기본사항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	· 총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김태수 조사관 ☎ 02-1234-5670		
상호(법인명)	· (주)○○○○○○○○○○	성명(대표자)	· (주)○○○○○○○○○○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통신기기 소매업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결업) 과·면세 결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검토)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결업) 과·면세 결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판매가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기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지연전송(0.5%)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세법개정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년 기 · 신고구분 예정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 2022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신탁법」 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 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확대('22.7.1.시행) ·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 2억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확대 · 30만원 → 50만원 미만 ·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기재시 가산세(0.5%)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로 단축 · ('22.1.1.이후 거래 분부터) (현행)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보증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부가세 면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운영·사용 관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를 상향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를 상향(21% → 23.7%)

○ 세법해석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세하기

년 예정 확정

주요세법 해석사례 54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가산세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 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05, 2020.11.20.)
공통	가산세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 2021.06.22.)
공통	가산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5, 2017.11.16.)
공통	가산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공통	공급가액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2021.06.24.)
공통	공급가액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06.29.)

○ 대법원주요판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세하기

년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원고	세목	판시 사항
조○숙 외 1 (2020두40914)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권○오 외 3 (2020두43289)		
정○범 (2020두44749)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채○경 (2020두42637)		
김○임 외 3 (2020두44725)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석○원 (2017두49157)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A로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납할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로부터 A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유한 책임회사 (2021두39447)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회사와 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은 원고 본점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과거 신고내용분석

- 계별분석자료
- 기본사항
- 과거신고내용분석
- 세법개정내용
- 세법해석사례
- 대법원주요판례

● 과거 신고내역 분석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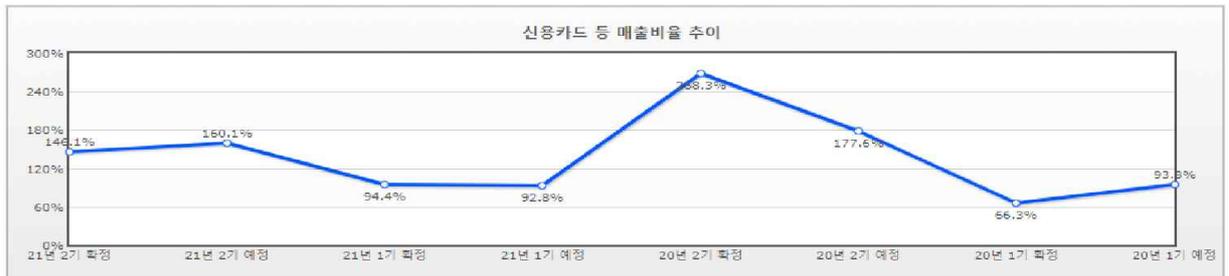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기		2021년 1기		2020년 2기		2020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매출액 (영세율)	45 (0)	46 (0)	61 (0)	51 (0)	21 (0)	33 (0)	71 (0)	71 (0)
매입액 (조정자산)	10 (0)	11 (0)	10 (0)	11 (0)	11 (0)	13 (0)	13 (0)	12 (0)
납부/환급세액	3	3	4	3	4	5	5	5
부가가치	77.2	78.1	82.4	78.0	48.5	61.5	81.8	83.1

※(참고) 부가가치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제외, 매입액 : 신고서상 매입금액 - 조정자산매입액)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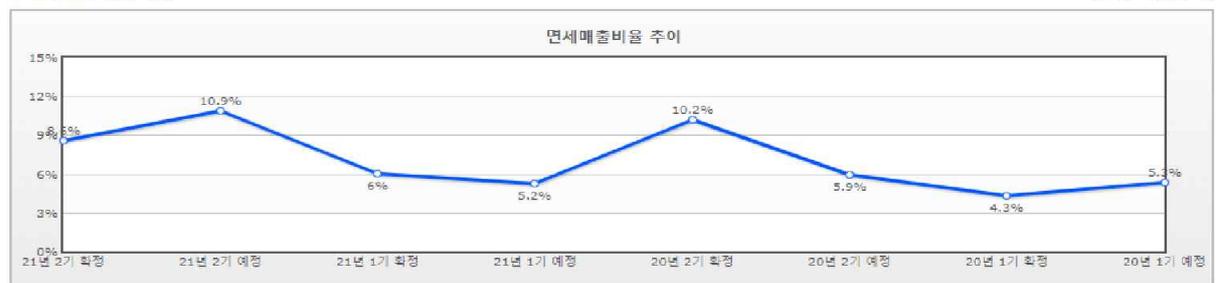


구분	2021년 2기		2021년 1기		2020년 2기		2020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45	46	61	51	21	33	71	71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66	75	57	47	57	60	47	67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146.1	160.1	94.4	92.8	268.3	177.6	66.3	93.8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과세 매출금액

● 면세매출 신고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기		2021년 1기		2020년 2기		2020년 1기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과세 매출금액	45	46	61	51	21	33	71	71
면세 수입금액	4	5	3	2	2	2	3	4
면세 매출비율	8.6	10.9	6.0	5.2	10.2	5.9	4.3	5.3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면세 수입금액 : 신고서 상 면세사업수입금액
 전체 수입금액 : 과세매출금액 + 면세 수입금액
 면세매출비율 : 면세 수입금액 ÷ 전체 매출금액

참고 6

신고내용확인 추정 사례

사례 1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할인 이벤트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성 상 신용카드 매출 외에 기타 현금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발생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무하거나 소액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스크린골프 창업 자료를 수집하여 특정 매입(유지보수비 등)에 비례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 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후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 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건설업자 B는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 사업자 B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건설용역을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 자료



사례 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사업자 E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사업자 C가 고액의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사업자 D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면세) 및 건물(과세) 공급과 관련하여 공동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 계산하여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 금융자문료,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공동매입세액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